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의 본문 ‘(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의2의 인용조문 ‘법 제15조의2제1항’을 ‘법 제1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의7을 제21조의8로 하고, 제2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7(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의8제1항(종전의 제21조의7제1항)의 인용조문 ‘법 제15조의3제1항’을 ‘법 제15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의8부터 제37조의13까지를 제37조의15부터 제37조의20까지로 하고, 제37조의8부터 제37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8(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이하 “정밀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8의3과 같다.

②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

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별 병해충 조사지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검사 시설의 평면도

3.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가. 검사 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나.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라.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마.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의9(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①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정밀검사기관은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37조의8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제37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37조의10(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① 법 제30조의3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검사기관의 명칭
2. 검사기관의 소재지
3. 검사 항목
4. 검사 인력
5. 검사 시설
6.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7. 업무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4항 단서조항에서 “농림축산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성명
2. 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7서식의 정밀검사기관 변경신고서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37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7호의8서식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의11(검사실적의 보고)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 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 검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12(정밀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13(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① 정밀검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병의 동정 및 유전자 분석
2. 해충 분류동정 및 계통 분석
3. 기타 식물 병해충 진단 분석 등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정밀검사 의뢰서를 해당 정밀검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검사 시료를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③ 정밀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의11서식의 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 보고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정밀검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의14(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0(종전의 제37조의1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3항, 제3항제4호, 제5항 및 제6항 중 “산림청장”을 각각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3. 국립종자원장: 「종자산업법」에 따른 사과·배 묘목 재배지역

제37조의21부터 제37조의2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1(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8의5와 같다.

②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예찰조

사기관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별 병해충 조사지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정보(기관 소개, 목적, 업무 분야 등을 포함)
2. 예찰인력 정보(기관 내 전문가의 경력, 자격, 경험을 기술한 이력서)
3. 예찰능력 증명 서류(관련된 성과나 경험을 나타내는 보고서, 연구, 논문 등)

4. 시설 및 장비(기관이 보유한 시설, 장비에 대한 명세와 설명)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찰에 관한 업무규정

가. 예찰 대상별 예찰 소요 기간

나. 예찰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 예찰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라. 업무 분장 및 예찰 절차 등 예찰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3서식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찰조

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의22(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예찰조사기관은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의12서식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37조21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3서식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37조의23(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① 법 제33조의2제4항 본문에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찰조사기관의 명칭
2. 예찰조사기관의 소재지
3. 예찰 항목
4. 예찰 책임자
5. 업무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4항 단서조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성명
2. 예찰조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예찰조사기관 변경신고서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37조21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7호의13서식의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의24(조사실적의 보고) 예찰조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매분기 시작 후 10일내에 전분기의 조사 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분기 조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5(예찰조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7호의14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26(예찰조사기관의 조사지역 및 조사방법 등) ① 예찰조사기관은 해당 예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또는 검역본부와 예찰계획, 대상 병해충, 예찰지역 및 일정 등을 협의하여 예찰 할 수 있다.

② 예찰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 이후 3일 이내 조사실적을 해당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또는 검역본부에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예찰조사기관은 검역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 즉시 별지 제27호의15서식의 병해충 발생 신고서를 예찰 조사기관의 관할 기관인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예찰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의27(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6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8(자료·정보의 작성 및 보존 등)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식물 재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7호의16부터 18까지의 서식으로 작성·보존 해야한다.

1. 과수원 등 재배지 출입기록
2.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내역
3. 묘목·종자 등 구매내역
4. 전정 등 작업 이력 및 농작업자 내역

제37조의29(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법 제33조의5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별표 8의7과 같다.

별표 6의4 제목의 인용조문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3부터 8의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제27호의7서식부터 제27호의1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의8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전문검사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4호			
1) 별표 6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인력, 시설, 설비 및 검사능력이 미달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별표 6의2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검사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정취소		
마.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5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사. 법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의3 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아.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제15조의3 제1항제7호			
1) 별표 6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별표 6의3제6호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3) 별표 6의3제7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4) 별표 6의3제7호나목부터 라목까지 · 제8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8제1항 관련)

1. 식물병해충 정밀검사 실시기관 지정은 지방 농촌진흥기관(도·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농업기술센터), 식물병해충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및 식물병해충 관련 대학 소속 산하연구소,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 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 검사 인력
 - 가. 정밀검사기관은 검사에 필요한 검사 책임자 1명, 검사원 2명(1개의 검사항목만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책임자 1명, 검사원 1명)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 나. 정밀검사기관의 책임자 및 검사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임학, 원예학,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고,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임학, 원예학,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고,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식물병해충과 관련된 졸업논문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 4)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하고,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시설 요건
 - 가. 정밀검사실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이상의 시설이어야 한다.
 - 나. 시료보관실을 또는 시료보관함을 별도로 분리·운영해야 하고, 시료의 폐기를 위한 고압멸균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검사설비 요건

생물안전작업대, 고압멸균기,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기, 중합효소연쇄반응기, 핵산추출기, 초순수제조장치, 배양기, 냉동고, 냉장고, 원심분리기, 정밀저울, 전기영동기, 광학현미경, 실체현미경 및 그 밖에 기구 및 시약 등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검사능력

정밀검사기관은 농촌진흥청장 및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정밀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 능력 측정·평가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6.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가. 농약 및 비료 관련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 및 그와 연관된 기관(단체)

나. 농약 제조, 수입·원제 업체 등 민간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1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 일부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정밀검사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다만,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 련 법 령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3호	검사업무 일부정지 1월	검사업무 일부정지 3월	지정취소
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4호	검사업무 일부정지 1월	검사업무 일부정지 3월	지정취소
마.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5호	검사업무 일부정지 1월	검사업무 일부정지 3월	지정취소
바.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6호	검사업무 일부정지 1월	검사업무 일부정지 3월	지정취소
사.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의4 제1항제7호	검사업무 일부정지 1월	검사업무 일부정지 3월	지정취소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21제1항 관련)

1.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은 식물병해충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및 식물병해충 관련 대학 소속 산하연구소,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 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 조사 인력

가. 예찰조사기관은 예찰에 필요한 책임자 1명, 예찰 전문요원 3명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인력(이하 이표에서는 “예찰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균학, 세균학, 바이러스학, 임학, 원예학,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학사(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고,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하고,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지도·조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정부기관, 연구소, 대학교 또는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3)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지도·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예찰 전문인력 중 1명 이상은 식물병해충 관련된 졸업논문으로 석사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또는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지도·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3. 예찰 전문인력의 교육

예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과 병행하여 육안 관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연 1회 이상의 교육 계획이 수립하고 실시되어야 하며, 예찰조사기관 지정전에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예찰능력 평가

농촌진흥청장 및 검역본부장은 식물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예찰능력을 측정·평가하여 부적합 판정시 예찰조사기관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7조의27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 일부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 행위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예찰조사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3조의3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사를 한 경우	법 제33조의3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법 제33조의3 제1항제3호	예찰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예찰업무 일부 정지 2개월	지정취소
라.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3조의3 제1항제4호	예찰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예찰업무 일부 정지 2개월	지정취소
마.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의3 제1항제5호	예찰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예찰업무 일부 정지 2개월	지정취소
바. 제3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의3 제1항제6호	예찰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예찰업무 일부 정지 2개월	지정취소
사.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조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3조의3 제1항제7호	예찰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예찰업무 일부 정지 2개월	지정취소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표 8의7] <신 설>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제37조의29제1항 관련)

1. 식물재배자는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교육하고 준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궤양 증상은 전지·전정 시 제거
 - 작업용 도구(전지가위, 톱 등)는 반드시 소독 후 작업
 - 작업 도구 소독은 나무가 바뀔 때마다 실시
 - 꽃을 손으로 따낼 때 손도 수시로 소독
 - 작업복이나 신발은 과수원 출입 전·후에 소독을 시행하고 작업복은 60℃ 이상의 물로 세탁
 - 병 발생 과원에서 사용한 전정 도구는 70% 알콜액, 유효 약제 0.2% 함유 락스 또는 20배 희석액으로 반드시 90초 이상 담가 소독하여 사용토록 지도
 - 전정 작업 시 작업 인부가 소지해 온 외부 도구는 사용치 않도록 하고, 되도록 과원별 전용 도구를 사용토록 하고 만일 사용 시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가 소독후 사용
2. 식물재배자는 제37조의28에 따라 농작업 참여자 현황 및 작업내역, 교육 내용을 영농 일지에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3. 다만, 식물재배자가 시행령제3조의7에 따른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한 농작업자를 고용한 경우, 예방 교육실시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5서식] <신 설>

(앞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 진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성 명
농림축산검역본부

55mm × 85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식물방역법」 제15조 의제2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조의7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1.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 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표를 휴대한 사람은 식물방역법 관련 검사(조사)기관에 관한 점검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표를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식물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대표자)	검사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검사항목	[]세균·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곰팡이·균류	[]해충	[]선충	[]잡초	
검사 인력(명)	검사책임자 명, 검사원 명						
검사실 면적	실험실 규모(㎡) 생물안전작업대(규모 : 대), 고압증기멸균기(대), 생물학적 활성 제거 설비(대), RT-PCR(대), PCR(대) 기타 시설 :						
변경승인 신청	[]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검사항목		
	[]검사 인력		[]검사 시설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업무규정		[]기타()				
변경 신고	[]대표자 성명		[]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기타()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신청(신고)인 첨부서류	1. 정밀검사기관 지정신청 : 뒤쪽 참조 1. 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및 변경내용 증명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할	1. 국가기술자격증 2. 사업자등록증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기 관 명 :
- 소 재 지 :
- 검사항목 :
- 유효기간 :

「식물방역법」 제30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제3항, 제37조의9제2항 및 제37조의10제5항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 촌 진 흥 청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의9서식] <신 설>

(앞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 진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성 명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55mm × 85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식물방역법」 제30조 의제3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7조의12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1.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 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표를 휴대한 사람은 식물방역법 관련 검사(조사)기관에 관한 점검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표를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0서식] <신 설>

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의뢰자	기 관 명(성 명)	사업자 등록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병해충 구분	[] 병 [] 해충 [] 잡초	
	추정 병해충명		
	발견 일자	년 월 일	
	발생(발견)지역 (주소)		
	재배자 성명		
	발생 농작물 (품종 등)		
	피해증상 및 발생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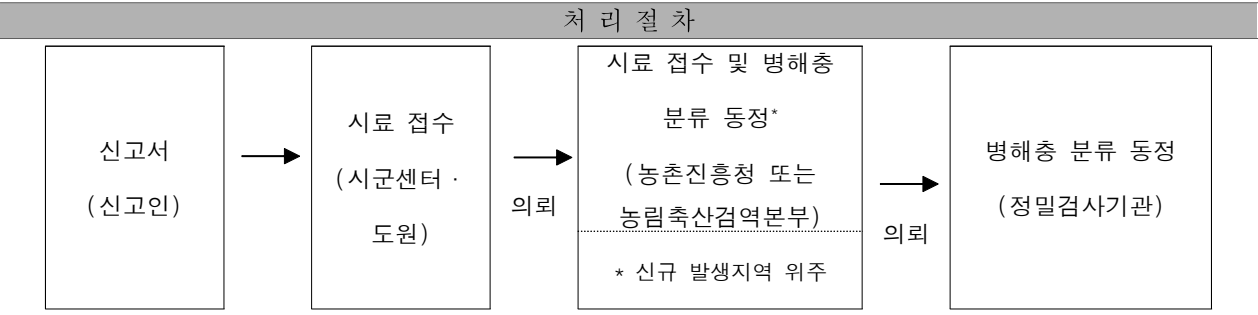
「식물방역법」 제30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제2항에 따라 병해충 발생 사진 및 시료를 첨부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 고 자

○○대학교 총장
농업기술원장 귀하

첨부	1. 농작물 피해 증상 및 신고 병해충 사진	수수료
	2. 농작물 피해 증상 시료 및 신고 병해충 표본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 <신 설>

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

진단개요	의뢰인(기관)		전화번호
	주 소		
	병해충 구분	[] 병 [] 해충 [] 잡초	
	발견일자		
	발견지역(주소)	년 월 일	
	재배자 성명		
	발생 농작물 (품종)		
	피해증상 및 발생현황		

진단 결과	
-------	--

「식물방역법」 제30조의3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제3항에 따라 병해충 진단 결과를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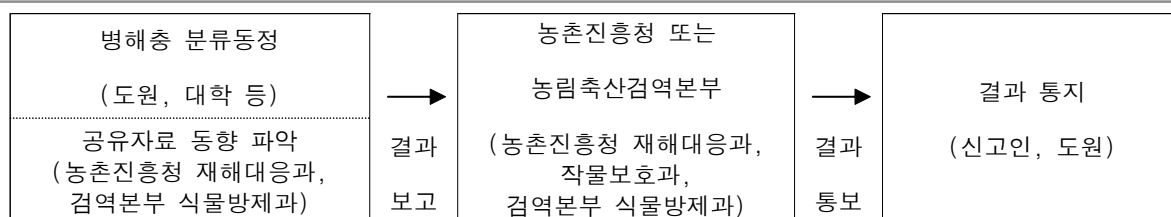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 고 기 관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작물 피해 증상 사진	수수료
	2. 신고 병해충 사진이나 병해충 표본	없 음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a/㎡」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2서식] <신 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대표자)	예찰기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예찰 인력(명) 신청 조사지역 (도 단위로 신청)	책임자 명, 예찰전문가 명		
변경승인 신청	[]예찰조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예찰 항목
	[]조사원	[]업무규정	[]기타()
변경 신고	[]대표자 성명	[]예찰조사기관의 조직 현황	
	[]기타()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식물방역법」 제3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2항, 제37조의22제1항, 제37조의23제2항 및 제37조의2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지정갱신 []변경승인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신청(신고)인 첨부서류	1. 식물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신청 : 뒤쪽 참조 2. 식물병해충 예찰전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및 변경내용 증명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관련 증명서류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변경승인신청"부터 "변경 사유"까지는 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기 관 명 :
- 소 재 지 :
- 유효기간 :

「식물방역법」 제3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3항, 제37조의22제2항, 제37조의23제4항 및 제37조의23제5항에 따라 식물병해충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의14서식] <신 설>

(앞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 진 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성 명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55mm × 85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식물방역법」 제33조 의제2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7조의25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 명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1.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 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표를 휴대한 사람은 식물방역법 관련 검사(조사)기관에 관한 점검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표를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5서식] <신 설>

병해충 발생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 고 자	기 관 명	사업자	
	주 소	등록증번호	
		전화번호	
신고 내용	병해충 구분	[] 병 [] 해충 [] 잡초	
	발견 일자	년 월 일	
	발생지역 (주소)		
	발생 농작물		
	피해 증상		

「식물방역법」 제33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6제3항에 따라 병해충 발생 사실을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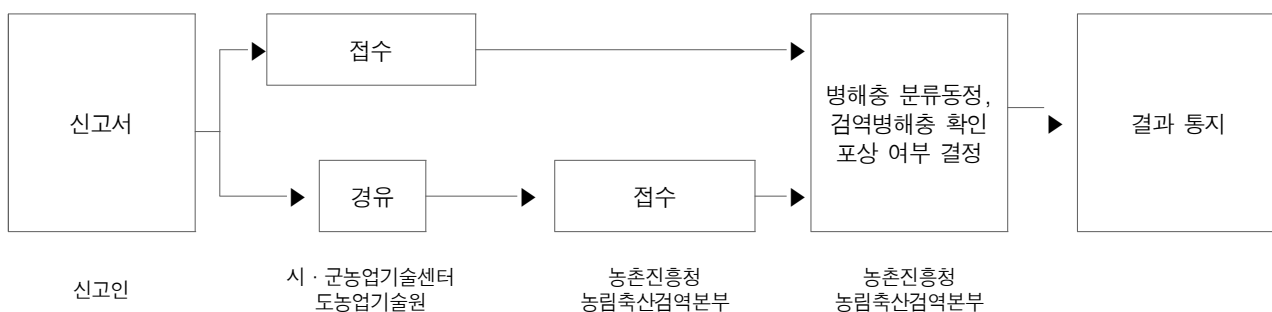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 고 자

농촌진흥청장 귀하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첨부서류	1. 농작물 피해 증상 사진 2. 신고 병해충 사진이나 병해충 표본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

과수원 등 재배지 출입 및 작업 기록부

일 시	성 명	연락처	시 간		용 무 (작업내용)	비 고
			입장	출장		

* 과원에 출입한 모든 외부인, 특히 작업자(전지·전정·적화·적과·붕지씨우기 등)와 차량
출입시 반드시 기록할 것

()년도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방 약제살포 기록부

구분	일시	작물정보		약제정보		살포방법	살포자	비 고
		종류	면적	약제명	사용량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표목·종자 등 구매 내역 기록부

[illegible]

* 비 고 : 구입한 묘목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즉시 사진 기록 및 시군센터 문의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이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u>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u>)해야 한다. 다만,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제1항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③ ----- ----- ----- -----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21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
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
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제21조의7(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5조
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② (생 략)

<신 설>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7(전문검사기관 조사담
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
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
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
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의8(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5조의
3제3항-----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8(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의 지정요건 및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이하 “정밀검사
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8의3과 같다.

②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7서식
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지정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별 병해충 조사지역
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
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
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
다.

1.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한다)
 2. 검사 시설의 평면도
 3.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
정
- 가. 검사 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나.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
방법

다.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라.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
획

마.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 업무에 필요한 사
항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
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
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
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
식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
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
부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
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밀검사기관

<신 설>

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
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의9(정밀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①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 지정을 갱
신하려는 정밀검사기관은 정밀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27
호의7서식에 따른 정밀검사기
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37조
의8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
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
다) 및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
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
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
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
용이 제37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에 따른 정
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
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

<신 설>

부장은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37조의10(정밀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① 법 제30조의3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기관의 명칭
2. 검사기관의 소재지
3. 검사 항목
4. 검사 인력
5. 검사 시설
6.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7. 업무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정밀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4항 단서조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성명

2. 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7서식의 정밀검사기관 변경신고서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 설>

<신 설>

<신 설>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37조의8제1항에 따
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
지 제27호의8서식에 따른 정밀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의11(검사실적의 보고) 정
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5
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 실적을 농촌진
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
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
도 검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
다.

제37조의12(정밀검사기관 조사단
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
의3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
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
지 제27호의9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13(정밀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① 정밀검사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병의 동정 및 유전자
분석

2. 해충 분류동정 및 계통 분
석

3. 기타 식물 병해충 진단 분
석 등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
부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하
는 경우 별지 제27호의10서식
의 정밀검사 의뢰서를 해당 정
밀검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기관은 해당 기
관에서 검사 시료를 직접 수령
하여야 한다.

③ 정밀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
라 정밀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의11서식의 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를 농촌진흥청
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
부장은 정밀검사기관에 제1항
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비

<신 설>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의14(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4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8(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① ~ ⑦ (생략) 제37조의9(식물방제관의 증표) (생략) 제37조의10(분포조사) ① ~ ④ (생략) 제37조의11(역학조사) ① ~ ⑤ (생략) 제37조의12(병해충위험평가) ①	제37조의15(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6(식물방제관의 증표)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7(분포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8(역학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의19(병해충위험평가) ①

~ ④ (생 략)

제37조의13(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병해충 조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신 설>

3. (생 략)

4. (생 략)

② (생 략)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예찰조사원(이하 “예찰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이 식물병해충 예찰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생 략)

1. ~ 6. (생 략)

⑤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예찰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0(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국립종자원장: 「종자산업법」에 따른 사과·배 묘목 재배지역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

-----.

1. ~ 3. (현행과 같음)

4. -----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

-----.

④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⑤ -----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

조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찰조사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

⑥ -----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

--.

제37조의21(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의 지정 요건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이하 “예찰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8의5와 같다.

②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예찰조사기관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의20제1항에 따른 기관별 병해충 조사지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정보(기관 소개, 목적, 업무 분야 등을 포함)

2. 예찰인력 정보(가의 경력, 자격, 경험을 기술한 이력서)

3. 예찰능력 증명 서류(관련된 성과나 경험을 나타내는 보고서, 연구, 논문 등)

4. 시설 및 장비(기관이 보유한 시설, 장비에 대한 명세와 설명)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찰에 관한 업무규정

가. 예찰 대상별 예찰 소요 기간

나. 예찰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 예찰 인력에 대한 교육 계

획

라. 업무 분장 및 예찰 절차
등 예찰 업무에 필요한 사
항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
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는 별지 제27호의13서식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
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
한 사항 외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
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의22(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 지정을 갱
신하려는 예찰조사기관은 예찰

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의12서식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37조 21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3서식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신 설>

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37조의23(예찰조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① 법 제33조의2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찰조사기관의 명칭
2. 예찰조사기관의 소재지
3. 예찰 항목
4. 예찰 책임자
5. 업무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4항 단서조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신 설>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성명

2. 예찰조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예찰조사기관 변경신고서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37조21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7호의13서식의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의24(조사실적의 보고) 예찰조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5

<신 설>

<신 설>

항에 따라 매분기 시작 후 10일
내에 전분기의 조사 실적을 농
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
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
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3
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분기 조
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5(예찰조사기관 조사담
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33조의
2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7호의14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26(예찰조사기관의 조사
지역 및 조사방법 등) ① 예찰
조사기관은 해당 예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
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
기술센터”라 한다) 또는 검역본
부와 예찰계획, 대상 병해충, 예
찰지역 및 일정 등을 협의하여

<신 설>

예찰 할 수 있다.

② 예찰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 이후 3일 이내 조사실적을 해당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또는 검역본부에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③ 예찰조사기관은 검역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 즉시 별지 제27호의1서식의 병해충 발생 신고서를 예찰조사기관의 관할 기관인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의27(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33조의 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6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

<신 설>

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8(자료·정보의 작성 및
보존 등)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식물재배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별지 제27호의16부터
18까지의 서식으로 작성·보존
해야한다.

1. 과수원 등 재배지 출입기록
2.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예방
약제 살포 내역
3. 묘목·종자 등 구매내역
4. 전정 등 작업 이력 및 농작업
자 내역

<신 설>

제37조의29(병해충 발생의 예방
수칙) 법 제33조의5제4항에 따
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
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별표 8의7과 같다.